유럽共同體의 秩序*
(Die Ordn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Prof. Dr. Bernhard Groβfeld**
吳 峻 根*** 譯

◇차 례◇

Ⅰ. 시 작(Anfänge)
Ⅱ. 역 사(Geschichte)
Ⅲ. 개 관(Überblick)
Ⅳ. 조 직(Organisation)
Ⅴ. 직접적 효력(Direkte Wirkung)
Ⅵ. 우위성(Vorrang)
Ⅶ. 시장개방(Marktöffnung)
Ⅷ. 경쟁제한(Wettbewerbsbeschränkungen)
Ⅸ. 법일치(Rechtsangleichung)
Ⅹ. 유럽법형태(Europ. Rechtsformen)
Ⅺ. 통일유럽협정(E.E.A.)
Ⅻ.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XIII. 결 어(Schluβ)

유럽공동체의 질서는 독일 및 독일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힘, 현대의 경제적 필요성 및 과감한 새로운 질서를 위한 결정이 전 유럽대륙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

* 본고는 1992년 10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Groβfeld 교수 초청강연회에서 발표된 것임.

** Münster대학 교수, 동 대학 국제경제법연구소장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시 작(Anfänge)

이 모든 과정은 유럽 특히 독일을 몰락지경으로 까지 몰고갔던 두차례의 큰 전쟁, 즉 제 1 차 세계대전(1914~1918) 및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에 시작되었다. 두 번 모두 독일은 러시아·프랑스·영국 및 미국과 전쟁을 벌였었다. 이로 인하여 약 6천만명－그 중 독일인은 1천2백만명－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살육전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인류는 보다 더 큰 규모의 재앙을 체험하여야 하는가?

독일과 프랑스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Nein)"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부정은 1957년 로마에서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협약을 이끌어 내었다. 이 협약의 목표는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상호간에 최대한 일치시킴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와 동시에 상호간의 불안을 제거하며, 상대편에 정치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접근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유럽공동체 창립회원국은 독일·프랑스·이태리·벨기에·네델란드 및 룩셈부르크였다. 그후에 영국·아일랜드·덴마아크·그리이스·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Ⅱ. 역 사(Geschichte)

처음에는 누구도 이 공동작업의 커다란 성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 희망은 가지고 있었다. 참혹한 전쟁들이 유럽 공통의 기초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다. 대륙 및 영국을 포함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이와 같은 전통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를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공통적인 기독교 신앙, 공통적인 로마－게르만적 법원(römisch-germanische Rechtsquelle), 중세를 통한 공통의 정신적 조류, 종교개혁, 계몽주의시대와 공통의 자연과학. 이와 같은 조류는 중세의 유럽공통법(das Gemeine Europäische Recht, Common Law of Europe)을 형성하였으며, 개인이 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는 지위에 관한 유사한 관념을 창출하였고, 세계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Ⅲ. 개 관(Überblick)

유럽공동체는 처음부터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러한 유럽 공통의 관념에서 수립되었다. 유럽 안에서의 왕래의 자유, 모든 유럽인의 평등 : 이는 모든 시작의 핵심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국경이 장애가 됨이 없이 상거래와 왕래가 허락되는 공동시장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상품, 노동력의 공급, 영업소설치, 더 나아가 자본까지의 자유로운 왕래를 원했다. 내부 관세 장벽의 철폐, 근로자, 자유직업인 및 기업에 대한 제한의 철폐, 자본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철폐! 이 모든 사항들이 규정되었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국경만을 제거하고자 함은 아니었다. 개별기업들이 예컨대 카르텔의 구성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영역을 제한함을 막고자 하였다. 공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협약은 경쟁제한에 대하여 강력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특히 기업합병에 대한 통제가 추가된 이래 오늘날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경제제한을 규제하는 법의 발전은 유럽인에게는 특별한 좋은 일이다. 이 법영역은 원래 중세시대에 북이탈이아에서 발생하여 전 유럽에 관철된 것이며, 오늘날에 유럽에서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있다.

Ⅳ. 조 직(Organisation)

유럽공동체는 처음부터 단순한 국가간 협약 이상의 것이었다. 유럽공동체는 즉시 독자적인 기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 입법기구로서의 이사회(Ministerrat),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Commission), 통제기구로서의 유럽의회(das Europäische Parlament), 최고법원으로서의 유럽재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등이 그것이다.

유럽재판소는 보다 특별한 관심을 끈다. 이 재판소는 유럽의 공동작업을 촉진하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국가적 저항을 능동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적일 수 밖에 없다. 유럽재판소는 그 역할을 통하여 곧 높은 권위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재판소는 기술적으로, 소리없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망을 얻었다.

V. 직접적 효력(Direkte Wirkung)

법규정은 질서로 화체될 때에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협약의 추상적 언어로부터 어떻게 유럽경제와 유럽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질서가 창출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유럽법의 등장은 협약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법상으로 볼 때 국가간의 조약은 오직 당해 국가들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며, 시민들은 조약으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권리도 도출해 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유럽협약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바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1].

유럽재판소는 네델란드 정부가 벨기에 시민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과한 사건을 심리해야 했다. 네델란드 정부의 의견은 오직 벨기에 정부만이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벨기에 시민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럽재판소의 견해는 달랐다. 유럽재판소가 볼 때에는 유럽 협약은 국가간의 조약 이상의 것이었다.

유럽재판소는 더 나아가 국가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법질서를 창출하였다. 협약의 규정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직접적 효력을 발생하며 따라서 유럽 시민은 누구든지 이를 직접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후에 유럽재판소는 유럽이사회가 협약의 범위안에서 반포한 법률에 대하여도 직접적 효력이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협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자가 국가들 뿐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모든 유럽 시민은 사적 검찰관(privater Staatsanwalt)으로서 협약의 감시자가 되었다.

VI. 우위성(Vorrang)

이렇게 시작된 역사는 계속 진전되어 나갔다. 유럽재판소는 유럽법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며 이를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내법 — 헌법에 까지도 해당된다.

---

1) EuGHE(유럽재판소판결), 1963, 1, Rechtssache(사건번호) 26/62, Van Gend & Loos/ Niederländische Finanzverwaltung(네델란드 재무부).

이는 당연히 회원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다 – 그리고 처음에는 몇차례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법의 우위성이 널리 수용되었다. 회원국들은 유럽법이 전 공동체영역에 통일적으로 효력을 미치며, 국내법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 밖에도 유럽재판소는 일반적 법원칙(Allgemeine Rechtsgrundsätze)과 개별국가들의 헌법상의 보호영역을 초월하는 기본권(Grundrechte)들을 발전시켰다.

Ⅶ. 시장개방(Marktöffnung)

특히 중요한 것은 유럽재판소가 회원국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시장을 개방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국가들은 그 관세장벽을 철폐하였지만 때때로 다른 상거래 장벽을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예컨대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고유성을 가진 상품만이 그 국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그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는 Cassis de Dijon 사건을 들 수 있다[2].

Cassis de Dijon은 알콜농도 18%의 프랑스산 산딸기증류주(Brombeerlikör)이다. 어떤 상인이 이 술을 독일에 수입하려 했으나 독일 국경관리행정청은 이를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법에 의하면 증류주(Likör)는 알콜농도가 최소한 25도 이상이어야 한다.

유럽재판소는 독일측의 금지는 유럽협약(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30조(Art. 30 EWGV)) 위반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금지를 위한 어떤 정당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고, 유럽적 시각으로 볼 때 이는 자의적(willkürlich)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어떤 회원국이 어떤 생산품을 그 시장에 반입하기를 허용한 경우는 이를 반대할 확증적인 상황(überzeugende Umstände)제시할 수 없는 한, 다른 회원국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Cassis de Dijon에 대한 독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유럽재판소는 이와 같이 원천의 원칙(Ursprungsprinzip)을 수립하였고, 이로써 물결이 점점 빠르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독일은 그 맥주 및 소세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스파게티에 대하여, 프랑스는 향수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각국은 자국 고유

2) EuGHE(유럽재판소판결), 1979, 649, Rechtssache(사건번호) 120/78, Rewezentral-AG/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의 상품과 약간 다른 외국상품에 대하여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 효력은 더욱 확산되었다: 은행 및 보험업에 대한 국가적 특별규정이 과거에는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을 방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또한 원천의 원칙의 희생물이 되었다. 즉 만약 어느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어느 한 회원국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이상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유럽의 은행업 및 보험업에 있어서의 혁명(Revolution)!

Ⅷ. 경쟁제한(Wettbewerbsbeschränkungen)

유럽재판소는 경쟁제한에 대한 투쟁(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85조 (Art. 85 EWGV))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다. 유럽재판소는 각 국가의 국내시장에 공급계약(Vertriebsvertrag) 방식으로 상호간에 경계선을 획정하는데 대하여 먼저 제재를 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예컨대 독일의 기업이 그룬디히(Grundig)라디오 및 텔레비젼 수상기를 프랑스와 벨기에에 공급하면서 이 상품을 자국(즉 프랑스 또는 벨기에) 이외의 지역에 판매함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3]. 이와 같은 절대적인 영역보호(absoluter Gebietsschutz)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오늘날의 경쟁제한금지법은 시장지배적 지위(marktbeherrschende Stellung)의 남용을 방지하고(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86조(Art. 86 EWGV)) 대기업(Groβ unternehmen)간의 결합을 통제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결합의 통제에 관한 유럽규칙(Europäische Verordnung über die Kontrolle von Zusammenschlüssen)은 위와 같은 입법의 한 예이다[4].

경쟁제한에 대한 유럽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유럽재판소는 만약 어느 기업이 유럽공동체 내부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면 그 기업이 비록 유럽 이외 국가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법을 적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5].

---

3) EuGHE (유럽재판소판결), 1966, 321, Rechtssache (사건번호) 56, 58/64, Conston und Grundig/Kommission.

4) 기업합병의 통제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EWG Verordnung) Nr. 4064/89, 1989. 12. 31. 유럽공동체 관보 (Amtsblatt d. EG) Nr. 2 L 257/13.

5) EuGHE (유럽재판소판결), 1988, 5193, Rechtssache (사건번호) 89, 104, 114, 116, 117, 135, 139/8, Ahlström u.a./Kommission.

Ⅸ. 법일치(Rechtsangleichung)

시장개방은 모든 기업이 동일한 또는 최소한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간에 경쟁할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경쟁(fairer Wettbewerb)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만약 각 기업이 완전히 다른 법률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최소한으로 규율하는 국가로 몰려가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에서는 일정한 최소기준은 전 지역에서 적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법일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EWGV) 제54조제 3 항 g 호가 명문으로 법일치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의 경우이다. 법일치가 특히 중요한 분야는 대차대조표에 관한 법(Bilanzrecht)이다. 오늘날 이 분야에서는 연말결산(Jahresabschluß) 및 콘쩨른 결산(Konzernabschluß)에 관하여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6].

Ⅹ. 유럽법 형태(Europäische Rechtsformen)

이에서 더 나아가 서서히 유럽회사법(Europäische Gesellschaftsrecht)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럽경제이익단체(Europäische Wirtschaftliche Interessenvereinigung－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유럽주식회사, 유럽협동조합 및 유럽상호보험조합의 법제화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그저 아주 서서히 진전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기업내부에서의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갖지만(공동결정 Mitbestimmung), 영국의 경우 사회적 구조가 독일의 경우와 달라서 노동자의 이러한 참여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양보하려하지 않고 있고 타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회사법의 영역에서의 진전이 아주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

6) 참조 Großfeld, Common Roots, The International Lawyer 23 (1988), 865.

XI. 통일유럽협정(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이와 같은 유럽공동체의 발전은 1986년의 통일유럽협정과 1993년 1월 1일이라는 표어로 인하여 공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협정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고, 1993년 1월 1일까지 공동의 시장을 완성 시킨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제도적 장치를 부분적으로 강화 시켰다(유럽경제공동체협약(EWGV) 제8a조 및 제100a조 참조). 특히 법일치 과정을 개선하려 했고, 이를 위하여 이사회(Ministerrat)에 다수결(Mehrheitsentscheidung)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협정은 정치적 신호를 보냈고 이룩한 수준을 확인하였다. 즉 목표에 이미 상당히 도달했음과 비록 모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희망을 갖고 노력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XII.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에 관한 1992년 2월 7일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의 범위를 넘어서서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 조약은 다음 세가지를 중점으로 한다 :

① 이 조약은 유럽공동체가 각 회원국가와 비교할 때 너무 강력해지지나 않을까라는 회원국 및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도입하였다(유럽경제공동체협약(EWGV) 제3b조제2항). 이 원칙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럽공동체가 활동하게 된다. 모든 결정은 시민친화적(bürgernah)이어야 한다.

② 이 조약은 유럽공동체를 공통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가지며, 법제 및 내무정책을 합력하여 수행하는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③ 공통의 화폐와 공통의 통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유럽경제공동체협약(EWGV) 제105조 내지 109d조).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독일 마르크화를 유럽통화단위(ECU = European Currency Unit)와 교환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럽통화단위가 독일마르크처럼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XIII. 결 어(Schluβ)

이로써 유럽공통체에 관한 개관을 마치고자 한다. 많은 논점들, 예컨대 유럽공동체와 스위스와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관한 언급을 생략하였다. 새로운 회원국가들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 경제 및 법질서가 조화될 경우 어떤 위대한 것이 탄생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싶었다. 이러한 경우에 위대한 이상은 위대한 현실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독일 및 독일문화에 대한 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한다.